

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도서관의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립도서관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립도서관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립도서관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도서관	<input type="checkbox"/> 작은도서관	
	<input type="checkbox"/> 어린이도서관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도서관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등록번호	제 호	등록 연월일	
설립자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명칭			
소재지		전화번호	
사유	폐업일		

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

「도서관법」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
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첨부서류	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※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설립자가 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.

유의사항

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